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19
----------	------

제출년월일 : 2011. 9. .
제 출 자 : 충 주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안 제4조의2항③호 신설)

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해당 없음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11.8.30 ~2011.9.1)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3) 부패영향평가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목인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충주시 장애인 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와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 기금을 조성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장애인 복지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장애인 복지 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한 기금을 말한다.

제3조 중 “운용기금”을 “운영기금”으로, “설치”를 “설치하여”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충주시”를 “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5억원 이내의 출연금을 반영할 수 있다.

③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위원회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성·관리 및 운용”을 “조성과 관리·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충주시 장애인 복지위원회에서 제1항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관리 및 운용”을 “조성과 관리·운영”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금의 운영 및 결산

3. 기금의 지원대상자, 사업선정, 지원범위

4. 그 밖에 기금운영과 관련한 주요사업

제7조제1항 중 “그 회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의”를 “위원장이”로, “그 직무”를 “직무”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사업계획수립”을 “사업계획 수립”으로, “년2회”를 “연 2회”로 “인정할 때 또는”을 “인정할 때나”로 한다.

제10조의 제목“(기금운용관리)”를“(기금의 관리·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금은 충주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을 “기금은”으로, “한다”를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운영기금은 적립기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자수익금의 10퍼센트 이상을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기금관리공무원)”을“(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영관”으로, “기금운용관”을 “기금운영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기금운영계획 및 결산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를 “회계연도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운용방법”을 “운영방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 기금운용상”을 “그 밖에 기금운영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의 제목 “(운용기금의 사용)”을 “(운영기금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운영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금적립금액”을 “기금 적립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보호육성”을 “보호·육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장애인복지증진”을 “장애인 복지 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애인단체의 사업

제13조제3호중 “장애인복지증진”을 “장애인 복지 증진”으로, 같은 조 제5호 중 “조기발견사업”을 “조기 발견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를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에”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관련규정의 준용) 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p>	<p>충주시 장애인 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의한 장애인의 복지증진 책 임실천과 동법 제63조에 규정 한 장애인 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기 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와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 애인 복지 기금을 조성하고 그 관리와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금의 정의) 장애인복지기금이라 함은 충주시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 인관련단체의 보호육성 을 위한 각종사업 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금을 말한 다.</p>	<p>제2조(정의)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 금”이라 한다)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 ----- 보호·육성을 위한 여러 가 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한 기금 을 말한다.</p>
<p>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 를 설치 운영한다.</p>	<p>제3조(기금의 구분) ----- ----- 운영기금----- ---- 설치하여 -----.</p>
<p>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충주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과 	<p>제4조(기금의 조성) ①----- ---- 각 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 2.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과

현 행	개 정 안
<p><u>기타수입</u></p> <p><u>②시장은 제1항제1호의 기금출연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본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출연금의 합계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u></p> <p><u><신 설></u></p> <p><u>제5조(위원회 구성) ①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u>②제1항의 기능은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u></p> <p><u>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p>1. <u>기금의 조성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u></p> <p>2. <u>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u></p> <p>3. <u>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사업선정 또</u></p>	<p><u>그 밖의 수입</u></p> <p><u>②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5억원 이내의 출연금을 반영할 수 있다.</u></p> <p><u>③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u></p> <p><u>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조성과 관리·운영----- ----- ----- -----</u></p> <p><u>② 충주시 장애인 복지위원회에서 제1항의 기능을 대행한다.</u></p> <p><u>제6조(위원회의 기능) ----- ----- 조성과 관리·운영----- ----- 각 호----- -----.</u></p> <p>1. ----- 관리계획</p> <p>2. <u>기금의 운용 및 결산</u></p> <p>3. <u>기금의 지원대상자, 사업선정, 지</u></p>

현행	개정안
<p>는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p> <p><u>4.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u></p> <p>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u>그 회무를 총괄한다.</u></p> <p>②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u>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제9조(회의등) ① (생략)</p> <p>②정기회는 사업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u>년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u></p> <p>③ (생략)</p> <p>제10조(기금운용관리) ①기금은 <u>충주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 증식에 가장 유리한 예금으로 한다.</u></p> <p>②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의</p>	<p>원범위</p> <p><u>4 그 밖에 기금운영과 관련한 주요사업</u></p> <p>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 <u>위원회의 사무</u>-----.</p> <p>②위원장이 ----- ----- ----- <u>직무</u>----- -----.</p> <p>제9조(회의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사업계획 수립----- ----- <u>연 2회</u> ----- ----,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u>인정할 때나</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기금의 관리·운영) ①기금은 ----- ----- <u>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u></p> <p>②운영기금은 적립기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의</p>

현 행	개 정 안
<p>증식을 위하여 이자의 10퍼센트 금액이 상을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여야 한다.</p>	<p>증식을 위하여 이자수익금의 10퍼센트 이상을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여야 한다.</p>
<p>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 관은 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복지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p>	<p>제11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영관----- 기금운영관-----</p>
<p>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p>	<p>②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p>
<p>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p>	<p>제12조(기금운영계획 및 결산보고) ①----- 회계년도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방법 2.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운영방법 2. 그 밖에 기금운영상 -----
<p>③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p>	<p>③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p>

현행	개정안
제1차 정례회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p>제13조(운용기금의 사용)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기금적립금액이 5억원에 미달할 때에는 사용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된 장애인단체의 <u>보호육성</u> 2. (생략) 3. <u>장애인복지증진 및 재활</u> 4. <u>장애인단체사업의 지원</u> 5. 장애발생 예방 및 <u>조기발견사업</u> 6.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 	<p>제13조(운영기금의 사용) 운영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한다. --- 기금 적립 금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u>보호·육성</u> 2. (현행과 같음) 3. <u>장애인 복지 증진</u> ----- 4. <u>장애인단체의 사업</u> 5.----- <u>조기발견 사업</u> 6. <u>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에</u> -----
제14조(관련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4조(관련규정의 준용) 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 자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